

문서번호	교육지원과-101851	★주무관	청소년복지팀장	교육지원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5. 11. 26.	이혜원	곽노성	정연욱	고한석	하철승	11/26 박경수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		
보도여부			기획예산과장	조상연			
			법무팀장	이기호			
			주무관	송수연			

**『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』  
전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의견**

2015. 11. 25.

강 북 구

# 『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』 전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의견

## I

### 조례(안) 개요

- 발 의 일: 2015. 11. 20.
- 발 의 자: 유인애 의원
- 개정이유  
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검토의견: 전부개정조례(안) 수용

## II

### 주요 내용

- 조례 적용대상을 상위 법령에 따라 확대(안 제2조)
  - 12세 이하의 어린이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
-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(안 제3조)
-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규정(안 제4조)
  -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  -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
-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에 대한 사항(안 제5조)
  -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
  - 아동과 관련된 사항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
  - 아동은 교육·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

-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(안 제6조)
  -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정성 검토
  -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
-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9조~제17조)
  -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위원회는 위원장(부구청장)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
  - 위촉직: 사회복지·아동복지 전문가, 아동과 관련된 기관·단체의 대표자 등

### III 검토 의견 : 전부개정조례(안) 수용

-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개정
  -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과 「아동복지법」에서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나,
  -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경우 그 대상이 12세 이하의 어린이로 되어 있음.
- 조례 제명 변경
  -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 ⇒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
- 전부개정조례안 수용
  - 조례안은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과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적용 대상을 확대 하고,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붙임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 1부. 끝.